

第一章 總則

第一條 (目的) 本法는 意匠 考案을 獎勵 保護 育成함으로 技術의 進步 發展을 圖謀하고 國家 產業의 發達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登錄의 對象) 物件의 形狀 模樣이나 色彩 또는 이들이 結合한 것이 產業에 利用할 수 있는 新規한 意匠을 考案한 자는 그 考案에 對하여 意匠의 登錄을 受할 수 있다

第三條 (不登錄事由) 다음 의 意匠에 對하여는 登錄하지 아니한다 一 國旗 國章 軍旗 勳章 褒章 記章 其他 公共機關等의 標章과 外國의 國旗 國章 또는 國際機關等의 稱號 文字 標識等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

二 秩序나 風俗을 紊亂하게 할 念慮가 있는 것 三 欺瞞한 念慮가 있는 것 第四條 (新規性의 定義) ① 本法에서 意匠의 新規라 함은 意匠이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一 登錄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또는 公然히 使用된 것과 이와 類似한 것 二 登錄出願前에 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을 程度로 記載된 것과 이에 類似한 것

② 自己의 登錄한 意匠이나 商標에 類似한 것

似한 것은 이를 新規로 한 것으로 본다 第五條 (前條의 例外) 意匠 登錄을 受할 權利를 가진 자의 意思에 反하여 前條 各號의 一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六月以內에 出願하면 그 意匠은 新規한 것으로 본다

第六條 (先出願優先) 同一 또는 類似한 意匠에 對하여는 最先 出願者에 限하여 登錄한다 但 同日에 二以上の 出願이 競合하였을 때에는 出願者의 協議에 依하여 그 中 一人만을 登錄하며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登錄하지 아니한다

第七條 (物件의 指定) 意匠 登錄 出願人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類別中에서 그 意匠을 表現할 一個의 物件을 指定할 수 있다 第八條 (物件의 指定範圍) ① 意匠 登錄 出願人은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한 種의 物件을 指定할 수 있다 一 한 種의 物件이 同一 또는 類似한 形狀 模樣이나 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으로 되어 한 個의 意匠이라고 認定되는 境遇 二 한 種의 物件이 聯關性이 있어 한 個의 意匠이라고 認定되는 境遇

② 한 種의 物件이라 함은 慣習上 한 種로 販賣되고 同時에 使用되는 二以上の 物件을 말한다 第九條 (意匠의 不可分性) ① 한 種의 物件中 여러 種의 物件에 不登錄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 物件全體를 登錄하지 아니한다

② 한 種의 物件中 登錄無效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 物件全體의 意匠을 無效로 한다 第十條 (秘密保障의 請求) ① 意匠 登錄 出願者는 登錄日로부터 三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意匠을 秘密로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第十一條 (出願變更) ① 實用 新案 登錄 出願者가 그 出願을 意匠 登錄 出願으로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實用 新案 登錄 出願한 때에 이를 出願한 것으로 본다 但 實用 新案 登錄 出願에 對하여 拒絶査定을 받았을 境遇에는 그 最初의 査定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十二條 (意匠權의 發生과 內容) ① 意匠權은 登錄에 依하여 效力을 發生한다 ② 意匠權者는 그 登錄 意匠으로 된 物件을 業으로 製作 使用 販賣 또는 讓渡할 權利를 獨占한다 ③ 類似 意匠權은 最先에 發生한 意匠權의 處分에 따른다 ④ 意匠權이 그 出願前에 出願된 特許

權 實用 新案 權이나 商標 權과 抵觸하는 境遇 또는 登錄 意匠이 그 出願前에 出願된 特許 發明이나 登錄 實用 新案을 利用하는 것인 때에는 意匠權者는 特許 權者 實用 新案 權者 및 商標 權者의 實施 許諾 없이 그 登錄 意匠을 實施하지 못한다 ⑤ 意匠權이 그 出願前에 發生한 著作權과 抵觸하는 境遇에는 意匠權者는 著作權者의 許諾 없이 그 意匠을 實施하지 못한다 第十三條 (先使用者의 實施權) 意匠 登錄 出願前에 善意로 國內에서 그 意匠 實施 事業을 하거나 事業 設備을 가진 자는 그 登錄 意匠에 對하여 事業의 目的인 意匠 範圍內에서 實施 權을 가진다 第十四條 (原意匠權者 實用 新案의 原 實施 權者의 實施權) ①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자로서 登錄의 無效 審判 請求의 登錄以前에 善意로 國內에서 그 意匠 實施 事業을 하거나 事業 設備을 가진 자는 登錄 意匠에 對하여 事業의 目的인 範圍內에서 實施 權을 가진다 一 同一 또는 類似한 意匠에 對하여 二 以上の 登錄되었던 것 중 그 하나가 無效로 된 境遇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登錄을 받았던 原意匠權者 二 登錄을 無效로 하고 同一 또는 類似한 意匠에 對하여 正當 權利者에게 登錄을 한 境遇 그 無效로 된 意匠 權을 承繼하여 登錄을 받은 자

二 登錄을 無效로 하고 同一 또는 類似한 意匠에 對하여 正當 權利者에게 登錄을 한 境遇 그 無效로 된 意匠 權을 承繼하여 登錄을 받은 자

二〇二六一二七 一 係

權者의 保護) ① 特許權者는 自己의 權
利를 侵害한 者에 對하여 그 行爲를 禁止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法院은 前項의 請求가 理由가 있다고 認
定한 때에는 侵害한 者에 對하여 特許權
者를 保護하는 데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百四十八條 (損害賠償의 請求)

① 特許權者는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依하여 自己의 特許權을 侵害한 者에 對
하여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百四十九條 (特許權者의 信用回復)

① 特許權을 侵害함으로써 特許權者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對하여는 信用
回復을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
다

第九章 罰 則

第百五十條 (罰則) ① 다음各號의 一

에 該當하는 者는 五年以下의 懲役 또는
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特許權을 侵害한 者

二、特許權을 侵害하는 物件을 輸入한
者

三、出願公告가 있을 後에 그 特許에 關
한 權利를 侵害한 者

② 前項의 罪는 告訴를 기다려서 이를 論
한다

第百五十一條 (同前) 다음各號의 一

에 該當하는 者는 三年以下의 懲役 또는

五十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詐僞의 行爲로써 特許를 받았거나
審決 또는 判決을 받은 者

二、特許된 것이 아닌 物이나 그 物件의
容器、包裝類에 特許標識를 붙여
나 特許標識와 混同하기 쉬운 表示를
한 者

三、特許된 것이 아닌 物件이나 그 物件
의 容器、包裝類에 特許標識를 붙이
거나 또는 特許標識와 混同하기 쉬운
表示를 한 것을 販賣 또는 擴布한 者

四、特許된 것이 아닌 物件이나 特許된
것이 아닌 方法에 依하여 製作한 物件
을 製作、使用하게 하기 爲하여 또는
販賣 擴布하기 爲하여 廣告、看板、
標札類에 그 物件이나 方法이 特許된
것으로 表示하거나 또는 이와 混同하
기 쉬운 表示를 한 者

五、特許된 것이 아닌 方法을 使用하게
하기 爲하여 廣告、看板、標札類에
그 方法이 特許된 것으로 表示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表示를 한 者

第百五十二條 (沒收等) ① 第百五十

條各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組成한 物件
또는 그 行爲로 부터 生한 物件은 이를 沒
取하거나 被害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物
件을 被害者에게 交付할 것을 言渡하여
야 한다

② 被害者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物件의
交付를 받은 境遇에는 그 物件의 價額을

超過하는 損害의 額에 限하여 賠償의 請
求를 할 수 있다

第百五十三條 (僞證罪) ① 法律에 依

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
이 特許局 또는 그 屬託을 받은 法院이나
官署에 對하여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六月以上五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② 前項의 罪를 犯한 者가 그 事件의 查
定、審決 또는 確定前에自首한 때에는
二刑을 減輕 또는 免刑할 수 있다

第百五十四條 (秘密洩漏罪等) 特許

局職員 또는 그 職에 있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出願中의 發明 또는 出願者의 事
業上 秘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五年以下의 懲役 또는 五十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五十五條 (濫料) 本法에서 準用

하는 民事訴訟法 第二百七十一條 第二
項 또는 第三百三十九條의 規定에 依하
여 宣誓한 者가 特許局에 對하여 虛僞
의 陳述을 한 때에는 十萬圓以下의 濫料
에 處한다

第百五十六條 (不出頭等の 義務違反

에 對한 濫料) 特許局으로 부터 證人
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서 召喚된 者가 正
當한 事由없이 召喚에 應하지 아니하거
나 또는 그 義務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五萬圓以下의 濫料에 處한다

第百五十七條 (書類의 不提出에 對한
濫料) 特許局으로 부터 證據調査에

關하여 審判其他 物件의 提出 또는 提示
의 命令을 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그
命令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는 五萬圓以
下의 濫料에 處한다

第百五十八條 (濫料) 非訟事件 簡次法
第二百六條乃至 第二百八條의 規定은
前三條의 濫料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附 則

①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法令) 禮紀 四千二百七十九
年十月軍政法令 第九十一號 特許法中 發
明特許에 關한 規定은 이를 廢止한다

③ (總則規定) 本法 施行當時 醫藥中
心 特許審判 및 其他의 簡次는 舊法에 依한
다

④ (同前) 本法 施行當時 舊法에 依한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舊法에 依한다

國家再建最高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意匠
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尹 潯 善 國

禮紀 四千二百九十四年十二月三十一日

內閣首班 宋 堯 讚

商工部長官 丁 來 麟

◎ 法律 第九五一號

意 匠 法

150 전

決의 確定이 있은後 再審請求登錄前에 善意로 國內에서 發明實施事業을 하거나 또는 事業設備을 가진者는 그 特許發明에 對하여 事業의 目的 範圍內에서 實施權을 가진다

② 第五十五條 第二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三百三十四條 (再審에 依하여 實施權을 喪失한 原實施權者의 實施權) ① 實施權取得의 審決이 確定된後 再審에 依하여 이에 相反하는 審決의 確定이 있는 境遇에는 再審請求登錄前에 善意로 國內에서 그 發明實施事業을 하거나 事業設備을 가진者는 그 發明에 對하여 原實施權의 範圍에서 實施權을 가진다

② 第四十二條 第三項 및 第五十五條 第二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三百三十五條 (詐害審決에 對한 不服申請) ① 第三者가 請求人 및 被請求人과 共謀하여 第三者의 權利 또는 利益을 詐害할 目的으로 審決하게 한 理由로 하는 不服申請에 對하여는 再審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는 請求人 및 被請求人을 共同被請求人으로 한다

第七章 訴訟

第三百三十六條 (上告管轄等) ① 抗告審判의 審決을 받은者가 不服이 있을 때 에는 그 審決이 法令에 違反된 理由로

로 하는 境遇에 限하여 審決送達을 받은 날부터 三十日 以內에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② 前項에 規定한 上告 및 裁判에 對하여는 民事訴訟法의 上告 및 그 裁判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③ 大法院 判決에서 審決破毀의 基本이 된 理由는 그 事件에 對하여 特許局을 驅逐한다

第三百三十七條 (被告適格等) ① 前條 第一項의 上告 提起에 있어서 는 特許局長을 被告로 하여야 한다

但 抗告審判에서 請求人 및 被請求人이 있을 때에는 請求人 또는 被請求人을 被告로 하여야 한다

② 上告의 提起가 있을 때에는 大法院은 遲滯없이 그 趣旨을 特許局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通知가 있을 때에는 特許局은 遲滯없이 그 事件에 關한 書類를 大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第三百三十八條 (書類의 返還) 大法院에서 訴訟節次가 完結될 때에는 大法院은 遲滯없이 前條 第三項의 書類를 特許局에 返送하여야 한다

第三百三十九條 (一事不再理의 原則) 特許法 第五十六條의 許可, 特許權의 權利範圍에 關한 審判 또는 判決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同一事實 및 同一證據에 依하여 다시 審判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三百四十條 (審判繫屬中の 訴訟節次의 中止) ① 審判 또는 抗告審判에 있어서 는 民事訴訟 또는 刑事訴訟의 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그 審判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② 民事訴訟 또는 刑事訴訟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法院은 特許에 關한 審決의 確定이 있을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第三百四十一條 (審判, 抗告審判 및 上告의 費用) ① 審判, 抗告審判 및 上告에 關한 費用의 負擔은 別段의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事件의 審決로써 이를 決定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는 그 金額도 決定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費用 및 代理人의 報酬를 決定할 때에는 그 金額은 請求에 依하여 特許局 長이 이를 決定한다

③ 費用의 負擔과 金額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決定한다

第三百四十二條 (費用의 豫納命令) 審判 또는 抗告審判에서는 費用을 要하는 行爲에 對하여 그 費用의 豫納을 命할 수 있다

第三百四十三條 (費用 및 報償에 對한 價務名義) 審判, 抗告審判 및 上告에 關한 費用과 代理人의 報酬 決定 또는 本法에 依한 補償金의 決定, 決定 또는 審決의 強制執行에 關하여 는 民事訴訟法 第五百十九條 第一號의 規定에 依한 價務

名義로 본다 但 그 執行力이 있는 正本은 特許局 公務員이 이를 附與한다

第三百四十四條 (補償金에 關한 不服의 訴) ① 第十七條, 第四十四條 및 第五十三條의 規定에 依한 補償金 額의 通知나 決定 또는 審決을 받은者가 不服이 있을 때에는 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訴訟은 通知나 決定 또는 審決의 送達이 있은 날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經過한 때에는 이를 提起하지 못한다

③ 前項의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三百四十五條 (補償金에 關한 訴訟의 被告) 前條의 訴訟에 있어서 는 다음의者를 被告로 하여야 한다

一, 第十七條의 規定에 依한 補償金에 對하여는 補償金을 支給한 官署 또는 出願人

二, 第四十四條의 規定에 依한 補償金 額에 對하여는 補償金을 支給할 官署, 特許權者 또는 實施權者

三, 第五十三條의 規定에 依한 補償金 額에 對하여는 實施權者, 特許權者, 實用新案權者 또는 意匠權者

第三百四十六條 (適用의 排除) 第三百三十六條乃至 第三百三十八條의 規定은 第四百十條의 訴訟에 對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八章 特許權者의 保護

第三百四十七條 (權利侵害에 對한 特許

二〇二六一二五